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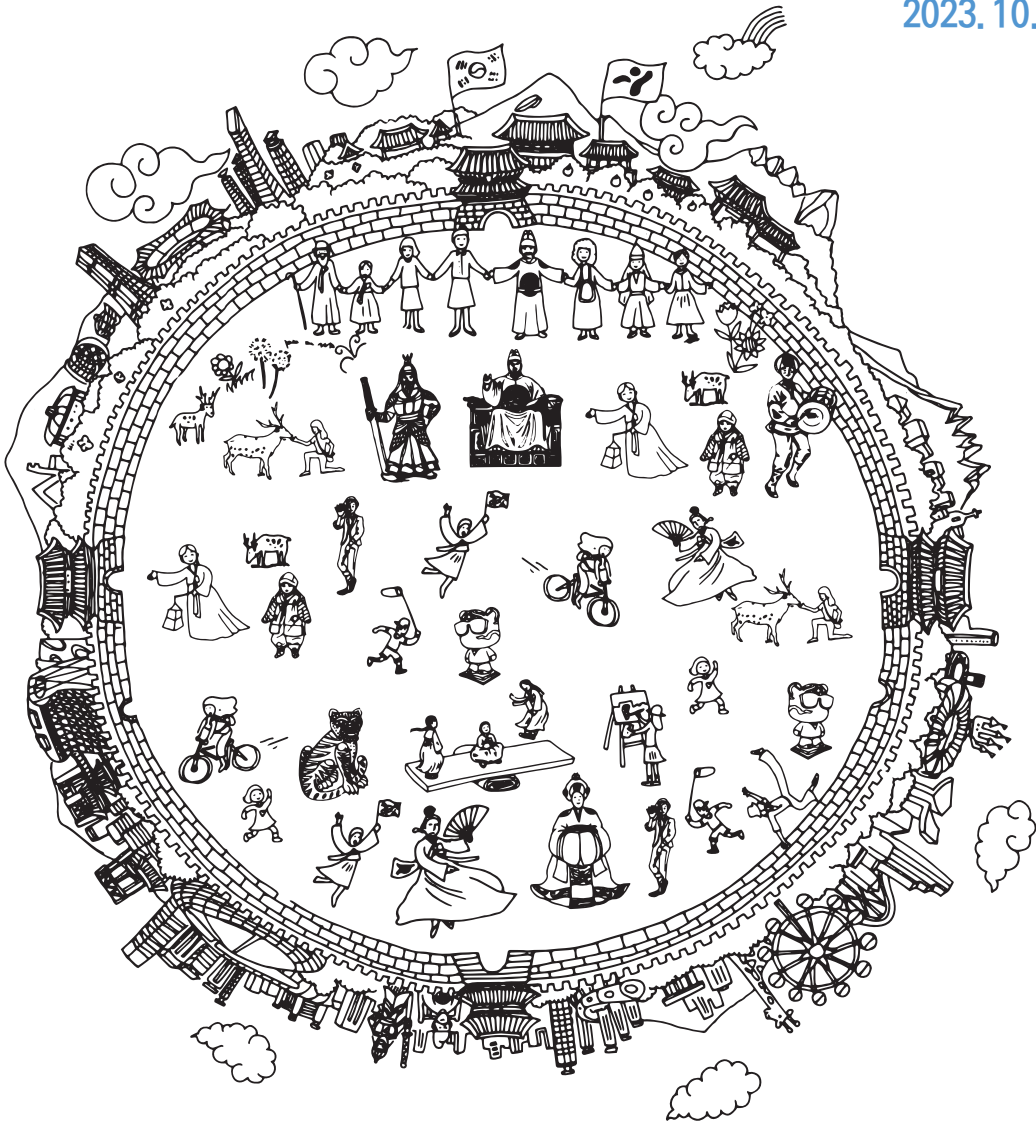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23호
2023. 10. 31.(화)



목 차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3-332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3-332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주민발안조례안이 제외됨에 따라 규칙 내 관련 조문 삭제
- 나. 2023. 10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 다. 그 외 동 규칙의 상위법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가. 법제심의위원회 주민발안조례 심의 위원 구성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삭제)
- 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안 제6장, 제24조~제26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신설)
- 다. 상위법규 정합성 제고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 규정 조문 문구 정비(안 제19조제2항~제4항)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분장 조항 삭제(안 제17조 제3항 삭제)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2282-8649

○ 이메일 : ggocbang@sen.go.kr

※ 이 교육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공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주민발안조례안이 제외됨에 따라 규칙 내 관련 조문 삭제
- 나. 2023. 10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 다. 그 외 동 규칙의 상위법규와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가. 법제심의위원회 주민발안조례 심의 위원 구성 조항 삭제(안 제10조제3항 삭제)
- 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안 제6장, 제24조~제26조, 별지 제6호서식~제8호서식 신설)
- 다. 상위법규 정합성 제고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 규정 조문 문구 정비(안 제19조제2항~제4항)
 - 조직개편 등에 따른 업무분장 조항 삭제(안 제17조 제3항 삭제)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보된 조례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을 “그 자치법규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훈령의 발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제6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24조(의견제출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한다.

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제2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검토 또는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2.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은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규칙명(※ 제정 의견의 경우 가칭) [] 제정 [] 개정 [] 폐지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주소		
제출의견	규칙 명칭	[] 제정 [] 개정 [] 폐지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		
	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결과	[] 수용 [] 일부수용 [] 불수용		
검토내용 ※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생략대상인 경우) 생략사유 지개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대상 제외 사유서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제정 [] 개정 [] 폐지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 연락처		
관련 법령 및 조례			
제외유형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외 사유 ※ 제외 유형에 맞게 사유를 상세히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구성) ①·② (생략)	제10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의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 제2조제4 항제2호의 민간위원 5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심의가 끝 나면 해당 민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삭제>
제17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② (생략)	제17조(의결 안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시의회에서 심의·의 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④ 제3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통보된 조례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19조(공포 및 발령) ① (생략)	제19조(공포 및 발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거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자치법규는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서울특별시보가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 한다.	③ ----- 그 자치법규가 서울특별시보에 게재된 -----.
④ 훈령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발령한다.	④ 훈령의 발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발령일은 게시한 날로 한다.
<신설>	제6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신설>	제24조(의견제출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5조(의견제출 검토)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검토는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업무분장 및 관련되는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주된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그 밖에 내용과 관련있는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 검토 시 협조부서의 검토내용을 반영한다. 1. 의견제출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2. 의견제출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u><신 설></u>	제26조(의견제출 결과통보 등) ① 주관부서의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를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검토 또는 검토를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2. 의견제출 제외대상인 경우: 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내용은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령(시정·기획 규칙 제8호서유) 교육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idth: 20%; vertical-align: top;"> 의견제출인 ※ 20세 이상이 공적으로 최고학위를 받은 경우 대표자 3명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최고제출인이 직인(인)·인장(인)을 붙여 제출 </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0%;">[] 대표자 ※ 서울·인천제출시 대표자(인)·인장(인)</td> </tr> <tr> <td colspan="3">주소</td> </tr> <tr> <td colspan="3">전화번호</td> </tr> <tr> <td colspan="3">전자우편</td> </tr> <tr> <td colspan="2"> 공통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td> <td colspan="2"> 대표자 인칭: 명 </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의견 ※ 취지 및 이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한 후 제출 </td> <td colspan="3"> 규칙(제정·개정·폐지) [] 제정 [] 개정 [] 폐지 </td> </tr> <tr> <td colspan="3" style="height: 100px;"></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참고자료 ※ 제출한 경우 제출, 문항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td> <td colspan="3" style="height: 100px;"></td> </tr> <tr> <td colspan="3">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취지 및 의견 제출합니다.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2"></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small;">210mm×297mm(단장지 80g/㎡ 또는 동등지 80g/㎡)</td> </tr> </table>	의견제출인 ※ 20세 이상이 공적으로 최고학위를 받은 경우 대표자 3명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최고제출인이 직인(인)·인장(인)을 붙여 제출	성명	[] 대표자 ※ 서울·인천제출시 대표자(인)·인장(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통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칭: 명		의견 ※ 취지 및 이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한 후 제출	규칙(제정·개정·폐지) [] 제정 [] 개정 [] 폐지						참고자료 ※ 제출한 경우 제출, 문항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취지 및 의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단장지 80g/㎡ 또는 동등지 80g/㎡)			
의견제출인 ※ 20세 이상이 공적으로 최고학위를 받은 경우 대표자 3명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최고제출인이 직인(인)·인장(인)을 붙여 제출	성명		[] 대표자 ※ 서울·인천제출시 대표자(인)·인장(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통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칭: 명																																														
의견 ※ 취지 및 이론, 근거 법령 및 조례를 명확하게 한 후 제출	규칙(제정·개정·폐지) [] 제정 [] 개정 [] 폐지																																															
참고자료 ※ 제출한 경우 제출, 문항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취지 및 의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교육감 귀하																																																
210mm×297mm(단장지 80g/㎡ 또는 동등지 80g/㎡)																																																
<신설>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령(시정·기획 규칙 제7호서유) 교육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 vertical-align: top;"> 의견제출인 </td> <td style="width: 20%;">성명</td> <td colspan="2" style="width: 60%;">제출일자</td> </tr> <tr> <td colspan="3">주소</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제출의견 </td> <td colspan="3"> 규칙 제정 [] 제정 [] 개정 [] 폐지 </td> </tr> <tr> <td colspan="3" style="height: 100px;"></td> </tr> <tr>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주문부서 및 검토자 </td> <td>부서명</td> <td>검토일자</td> <td></td> </tr> <tr> <td colspan="3">인원처</td> </tr> <tr> <td colspan="4"> 관련 법령 및 조례 </td> </tr> <tr> <td colspan="2"> 검토 일자 </td> <td> [] 수종 [] 일부수종 [] 불수종 </td> <td></td> </tr> <tr> <td colspan="2"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검토내용 ※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td> <td colspan="2" rowspan="2" style="height: 100px;"></td> </tr> <tr> </tr> <tr> <td colspan="4">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취지 및 인에 통보합니다. </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td> </tr> <tr> <td colspan="4"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교육감</td> </tr> </table>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주소			제출의견	규칙 제정 [] 제정 [] 개정 [] 폐지						주문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인원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일자		[] 수종 [] 일부수종 [] 불수종		검토내용 ※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취지 및 인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의견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주소																																															
제출의견	규칙 제정 [] 제정 [] 개정 [] 폐지																																															
주문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인원처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일자		[] 수종 [] 일부수종 [] 불수종																																														
검토내용 ※ 의견제출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취지 및 인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령(신설·개정·폐지) 제8호(보유) 교육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대상 제외 사유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외관제출인</td><td style="width: 40%;">성명</td><td style="width: 40%;">제출일자</td></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의견</td><td style="text-align: center;">규칙 명칭</td><td>[] 제정 [] 개정 [] 폐지</td></tr> <tr> <td colspan="2" style="height: 40px;"></td></tr>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주요부서 및 검토자</td><td style="width: 40%;">부서명</td><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검토일자</td><td style="width: 20%;"></td></tr> <tr> <td></td><td>담당자</td><td></td><td></td></tr> <tr> <td></td><td>연락처</td><td></td><td></td></tr> </table> 제출 방법 및 표제 제외유형 1. 후원회·관리·외부파 직할 공천특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업무를 벗어난 사항 제외 사유 외 제외 유형에 들어 사 유를 상세히 적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외관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제정 [] 개정 [] 폐지			주요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				연락처		
외관제출인	성명	제출일자																			
제출의견	규칙 명칭	[] 제정 [] 개정 [] 폐지																			
주요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																				
	연락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 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3년 월 일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